

---



---

 ◆ 政府 施策 ◆
 

---



---

## '96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지원지침 발표

### - 융자한도 확대, 절차 간소화 -

통산산업부는 올해 첨단기술 개발과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에 작년에 비해 무려 67% 늘어난 254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자금의 적기지원을 위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 수요기업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편리하게 소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취급은행도 확대지정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각 취급기관을 통해 자금수요기업의 신청을 받아 각 사업별로 금년도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을 배정하고 각 취급은행을 통해 올 상반기중 대부분의 자금이 수요기업에 대출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지침에 따르면 융자조건은 종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던 대출기간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고 융자한도액도 소요자금의 70%에서 80%로 확대하는 한편 자본재 시제품의 경우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원대상품목도 지금까지는 기계·전자·전기 등 업종별로 별도 고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자본재산업육성 전략품목으로 통합고시하고 기타 공업기반기술개발 후속사업 및 산업디자인·신소재 개발사업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금 취급기관을 종래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등 5개 기관에서 생산기술연구원과 국가공단협회를 추가한 7개 기관으로 늘리고 자금 취급은행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자금 대여약정을 맺은 각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통산부는 사업별 지원 우대조치를 마련했는데 2천억원이 지원되는 시제품 개발사업의 경우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약이 이뤄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산업기술연구조합등 동종업계의 공동개발조직이 구성된 품목 △자본재기술개발관리단이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품목 △생산자단체에서 표준화 또는 공용화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545억원이 지원되는 첨단기술개발사업에는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3%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중소기업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후속적으로 실용화 개발하는 경우 등에 지원대상과제 선정시 우대키로 했다.

## 간이징액 還給率表 개정 - 관세청, 中企희망 품목 반영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면장만 첨부해 환급을 신청하면 HS 10단위 기준의 수출물품별로 책정된 금액을 되돌려주는 간이징액환급률표를 개정, 3월 1일 수출면허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관세청이 전산자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상품목을 선정, 환급률표를 작성했으나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품목을 신청받아 간이징액환급률표를 작성한 것인 만큼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이 환급률표에 의해 앞서 낸 과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마련한 개정 간이징액환급률표에 따르면 지난해의 1140개보다 258개가 더 많은 1398개 품목이 고시됐다.

이에 앞서 지난 94년에는 1341개 품목이 간이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았었다. 또 적용업체는 5564개에서 6100업체로 늘어났다. 세부 품목내역을 보면 △섬유류 445개 △전기기기류 278개 △화학·고무류 213개 등 주로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들이다.

“간이징액 환급제도는 관세청이 마련한 일정 공식에 의해 환급액이 쉽게 산출되는 이점이 있어 갈수록 이용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실제로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면 환급액이 10~20%정도 더 많아지지만 계산방법이 복잡해 많은 수출업체들이 간이징액 환급제도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는 HS번호 4203.10-3020인 ‘자켓(양가죽)’과 HS 5509.42-0000인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에 대해 수출 10달러당 각각 190원과 140원을 환급하도록 규정, 이용자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고시와 관련, “간이정액 환급제도의 편리한 점 때문에 중소기업이 400여 품목에 대해 간이정액 환급제도 이용을 신청해왔다”면서 “이 가운데 250여 품목을 선정, 이번 개정고시에 반영했으며 이 가운데는 그간 전혀 적용을 받지 않던 염장미역 등 새로운 품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관세청은 이번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로 환급신청 건수가 총환급건수 대비 35%로 작년의 31.5%를 앞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환급규모 및 총환급액 대비 점유비도 작년의 701억원, 5.7%보다 크게 늘어난 1천억원, 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전기관련 품목)

H · S	품 명	10달러당 환급액(원)
850.110-1000	직류전동기(출력 37.5W 이하의 것)	130
8501.10-2000	교류전동기(출력 37.5W 이하의 것)	40
8501.31-1010	직류전동기(출력 100W 이하의 것)	70
8501.40-1000	단상의 교류전동기(출력 100W 이하의 것)	50
8501.40-1000	단상의 교류전동기(100~750W)	30
8501.51-0000	다상의 교류전동기(750W 이하)	30
8501.52-0000	다상의 교류전동기(750~75KW)	70
8502.12-0000	발전세트(75~375KVA)	10
8503.00-1010	전동기 부분품	90
8504.10-1010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전류 1A 이하)	30
8504.10-1020	방전등 또는 방전관용의 안정기(전류 1A~20A)	150
8504.21-9010	유입식의 계기용 변압기(용량 100KVA 이하)	100
8504.40-3000	بات데리 충전기	60
8504.40-5000	아답터	90
8504.40-9010	컴퓨터용 파워씨플라이유니트	70
8504.40-9090	정지형 변환기(기타)	70
8504.50-2000	인덕터	110
8504.50-9000	기타의 유도자	120
8504.90-0000	제8504호의 부분품	90

H · S	품 명	10달러당 환급액 ( 원 )
8504.21-9020	유입식의 계기용 변압기(용량 100~650KVA 이하)	140
8504.22-9010	유입식의 계기용 변압기(용량 650~1000KVA)	150
8504.22-9020	유입식의 계기용 변압기(용량 1000~5000KVA)	140
8504.31-2000	전압조정기(용량 1KVA 이하)	140
8504.31-9010	기타 변압기(용량 100VA 이하)	90
8504.31-9020	기타 변압기(용량 100~500VA 이하)	80
8504.31-9040	기타 변압기(용량 500VA~1KVA 이하)	140
8504.32-2000	전압조정기(용량 1~16KVA)	50
8504.40-1000	정류기기	120
8504.40-2090	인버터	130
8536.20-0000	자동차단기	70
8536.30-0000	전기회로 보호용의 기타기기	120
8536.41-0000	계전기(전압 60V 이하의 것)	110
8536.49-0000	기타의 계전기	90
8536.50-2000	푸쉬버튼형의 개폐기	60
8536.50-3000	마이크로형의 개폐기	80
8536.50-9000	기타의 개폐기	60
8536.69-1000	플러그와 잭	130
8536.69-2000	소켓	170
8536.69-9000	프러그와 소켓(기타)	80
8535.90-2000	터미널	90
8535.90-9000	기타의 접속용기기	60
8536.10-9000	퓨즈	170
8536.90-1000	접속함	60
8536.90-2000	커넥터	90
8536.90-9000	기타의 개폐용, 보호용기기	140
8537.10-2000	자동제어반(전압 1,000V 이하의 것)	230
8538.90-1000	개폐기용 부분품	190
8544.11-1000	동계의 절연도료 피복전선	180
8544.11-9000	동계의 권선용전선	180
8544.19-0000	기타의 권선용전선	100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	190

H · S	품 명	10달러당 환금액(원)
85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세트(자동차, 항공기, 선박용의 것)	160
8544.41-2000	플라스틱 절연전선(접속자 부착, 전압 80V 이하의 것)	100
8544.41-9000	접속자와 부착한 전선(전압 80V 이하의 것)	70
8544.49-2000	플라스틱 절연전선(기타, 전압 60V 이하의 것)	80
8544.51-2000	플라스틱 절연전선(접속자와 부착 전압 80~1,000V)	110
8544.59-9000	고무 절연전선(기타, 전압 80~1,000V)	120
8544.60-2010	프라스틱 절연전선(10~100KV)	160
8544.60-3090	기타의 전기도체(100KV 초과)	50

##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 마련 - 中企廳, 부도방지 자금 지원 확대등 -

중소기업청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타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도방지 및 신용대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중기청은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금융지원대책을 확정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향을 △유망한 중소기업의 부도방지 △물적부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제한 확대 등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지원시책을 마련했다.

우선 유망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애로로 부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부도방지 특별자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운전자금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제사업기금을 연쇄부도 방지대출 위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물적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신용평가에서 일정점수(65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용대출을 허용하고 신용보증 체제기간을 6개월을 단축해 운영키로 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술담보대출제도를 시중은행으로 확산해 나가고 신기술 인증업체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우대보증기업으로 추가해 우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망한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대책>

▲중소기업 부도방지 특별자금 지원 확대=현재 중소기업 전담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도방지 특별자금의 규모를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운용방법도 별도자금 운용 및 담당자 전결권을 확대하고 소요운전자금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직원에 대한 면책으로 자금운용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나아가 동제도가 시중은행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협조공한을 발송하고 한국은행 및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부도처리 사전심사 강화=회생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 부도처리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일선 지점장의 부도처리 재량권을 대폭 축소했다.

특히 일선 지점장의 부도처리 사전보고 대상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공제사업제도 전면 개편=현재 2호대출(상업어음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제사업 기금을 1호대출(연쇄도산 방지대출) 위주로 운영되도록 상업어음 할인금리를 현행 10%에서 시중금리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2호대출 한도를 납입부금의 10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축소했다.

또 부금납입액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연쇄도산방지 대출한도를 2억 1천만원에서 4억 2천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물적담보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중소기업 신용평가제의 철저한 시행=중소기업 신용평가표에 의한 평점이 일정점수(65점)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토록 하고 제도시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본점에서 창구지도 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실적이 우수한 은행 및 취급자를 발굴해 포상을 실시하고 한국은행의 자금지원 확대 등 유인 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보증지원=압류, 가압류, 가처분등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게재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신용보증기관의 부담을 고려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관 일선창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신용보증심사시 3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절차 간소화와 같은 특례조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기술담보대출제도의 확대실시=국민은행등 일부 은행에서 실시중인 기술담보대출제도를 전 은행으로 확산해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나가기로 하고 우선 모든 중소기업 전담은행에서 실시한 후 성과를 보아 시중은행으로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시범실시=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신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특례를 적용기로 했다.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자원 확대〉

▲국가 및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중소기업 전담은행 예치유도=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72개 국가기관과 여유자금 운용이 큰 102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예치토록 협조를 요청기로 했다.

▲운전자금 대출제도 탄력운영=통상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운전자금 대출기간을 업계사정에 따라 신속적으로 운영하고 대출기간 연장시 의무내입금제도를 폐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창업투자회사 대기성자금 활용확대=창투사의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창투사의 투자대기자금이 중소기업에 융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창투사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대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